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정부  
[2019누60365]

사 건 명 : 채무부존재 확인  
원 고 : 원고1  
    전남 완도군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2  
변론 종결 : 2020. 5. 13  
판결 선고 :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심 판결문 별지1 표 기재 어선원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를 두 차례 납부하여 위 보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전남 ○○군 ○○읍 ○○리 ○ ○○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기 이전에 위 주소를 발송 장소로 하여 발송된 2009. 10. 16.자 자진납부서의 등기우편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납부서를 송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설령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로부터 7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원고는 2008. 12. 31.자로 이 사건 어선원보험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및 ③ 우편물의 송달 여부는 각 우편물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80여 개 이상의 우편물 중 하나의 우편물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우편물도 송달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를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피고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별지2 표 기재 납입독촉장 중 2011. 4. 2.자 납입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 납입독촉장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납입독촉장이 발송된 무렵 원고는 납입독촉장의 발송주소인 전남 ○○군 ○○읍 ○○리 ○○○에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입독촉장의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납입독촉장의 발송주소에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가정 하더라도, 그들이 위 발송주소에서 원고와 생활을 같이하며 거주하였다거나, 그들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 납입독촉장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위 납입독촉장이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의 "3)" 을 "4)"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마지막 행의 각주 1) 첫 행의 "변론 종결 이후 피고가 제출한 자진납부서 양식" 을 "자진납부서 양식(을 제8호증의 4)"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달된 자진납부서는 독촉절차에서의 독촉장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처분서'의 성질도 아울러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납부서는 독촉절차에서의 독촉장의 성질을 갖는데,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5조는 어선원보험료 징수금의 통지와 독촉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피고 또한 2019. 6. 3.자 준비서면 등에서의 '어선원보험료의 부과에 관하여 ⑦납부서 ⑧납입고지서 ⑨납입독촉장 ⑩자진납부서 순으로 별도의 고지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②자진납부서에 선박명, 체납한 어선원보험료와 연체금 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는 미납자에게 납부할 액수를 안내하고 그 납부를 독촉하기 위하여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 자진납부서에 부과처분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자진납부서의 표제는 '자진납부 안내문'으로 되어 있고, 자진납부서의 내용 또한 이미 부과처분 된 어선원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안내, 독촉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및 ④피고의 주장과 같이 어선원보험료의 납입독촉장과 자진납부서 모두 부과처분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경우, 피고가 동일한 보험료 및 연체금에 관하여 수차례 부과처분을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는 또한, '원고가 2011. 2. 24. 이후 현재 원고가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함으로써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어선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서 등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은 부분은 원고의 불이익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변경된 주소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가 어선원재해보상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외에, 별도의 규정 없이 종전 주소로 발송된 서류의 송달을 의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4)"를 "7)"로 고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